

2021년 한눈에 보이는

유럽연합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CONTENTS

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01
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0
3. 비관세장벽 현황	12
4. 수출 애로사항	29
5. 현지화 자문보고서	31

유럽연합 (EU)

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2020년 EU(유럽연합) 회원국의 농축산식품 시장 규모는 1조 598억 5,500만 달러(한화 약 1,209조 4,006억 원)로, 2016년 이후 연평균 6.1% 성장률을 보임¹⁾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육류(23.6%)로 2,500억 1,900만 달러이며, 다음으로 스낵류(15.7%), 낙농품(14.6%) 순임
 - 2020년 기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식품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독일(19.2%), 프랑스(17.4%), 이탈리아(16.5%)로 전체 식품시장의 약 53%를 차지함

- 주요 3개국의 2020년 식품시장 규모는 약 5,628억 2,430만 달러(한화 642조 2,388억 원)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7% 증가세를 보임
 - 식품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독일로, 2,036억 4,310만 달러(한화 232조 3,772억 원)이며, 다음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순임
 - 주요 3개국의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3,593억 4,330만 달러(한화 410조 466억 원)로 전체 식품 시장 시장의 63.8% 차지
 - (*) 독일의 신선식품 시장이 1,337억 3,300만 달러(한화 약 152조 6,028억 원)로 독일 식품시장의 65.7%를 차지하며, 주요 신선식품 품목은 육류(23%), 낙농품(16.9%), 채소류(12.9%) 순임
 - (*) 프랑스의 신선식품 시장은 1,109억 4,700만 달러(한화 약 126조 6,016억 원)로 자국 식품시장의 60.1%를 차지하며, 주요 신선식품 품목은 육류(27.1%), 낙농품(13.8%), 채소류(10.0%) 순임
 - (*) 이탈리아의 신선식품 시장은 1,146억 6,330만 달러(한화 약 130조 8,423억 원)로 자국 식품시장의 65.7%를 차지하며, 주요 신선식품 품목은 육류(24.1%), 채소류(15.3%), 낙농품 및 난류(13.5%) 순임

1) 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를 제외한 EU 27개국의 식품 시장 규모임(출처: STATISTA)

- 주요 3개국의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2,034억 8,100만 달러(한화 약 232조 1,921억 원)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으며, 전체 식품 시장의 36.2% 차지
- (*) 독일의 가공식품 시장은 699억 1,010만 달러(한화 약 79조 7,744억 원)로 독일 식품시장의 34.3%를 차지하며, 주요 가공식품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5.8%), 스낵류(9.8%), 편의식품(4.7%)순임
- (*) 프랑스의 가공식품 시장은 738억 390만 달러(한화 약 84조 2,176억 원)로 자국 식품시장의 39.9%를 차지하며, 주요 가공식품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6.7%), 스낵류(13.3%), 편의식품(5.1%) 순임
- (*) 이탈리아의 가공식품 시장은 597억 6,700만 달러(한화 약 68조 2,001억 원)로 자국 식품시장의 34.3%를 차지하며, 주요 가공식품 품목은 스낵류(15.7%),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3.5%), 편의식품(3.7%) 순임

< 주요 3개국 시장 규모(2016~2020)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50,538.2	470,219.4	506,237.8	489,483.7	562,824.3	100.0	15.0
신선식품	293,906.4	306,875.6	330,518.0	319,613.2	359,343.3	63.8	12.4
가공식품	156,631.8	163,343.8	175,719.8	169,870.5	203,481.0	36.2	19.8
프랑스	150,475.0	155,292.3	164,618.9	158,950.0	184,750.9	100.0	16.2
신선식품	92,660.0	95,612.7	101,340.6	97,836.7	110,947.0	60.1	13.4
가공식품	57,815.0	59,679.6	63,278.3	61,113.3	73,803.9	39.9	20.8
독일	159,134.2	166,959.2	184,873.8	180,223.8	203,643.1	100.0	13.0
신선식품	105,852.7	111,105.4	123,079.6	120,035.3	133,733.0	65.7	11.4
가공식품	53,281.5	55,853.8	61,794.2	60,188.5	69,910.1	34.3	16.2
이탈리아	140,929.1	147,967.9	156,745.1	150,309.9	174,430.3	100.0	16.0
신선식품	95,393.7	100,157.5	106,097.9	101,741.2	114,663.3	65.7	12.7
가공식품	45,535.4	47,810.4	50,647.3	48,568.7	59,767.0	34.3	23.1

출처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0년 기준, EU 회원국의 가계당 식품 및 음료 소비규모는 1조 49억 유로로, 가계당 소비지출 규모의 14.8%를 차지함²⁾³⁾
 - 이는 2019년(13.0%) 대비 1.8% 증가한 수치임
 - EU 회원국의 가계당 평균 소비지출 항목은 주택비용(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항목이 25.7%로 가장 높으며, 식품 및 음료(14.8%), 교통 항목(11.6%), 순임
- 주요 3개국의 2020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8,146달러(한화 약 930만 원)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함
 - 1인당 식품 소비액이 가장 큰 국가는 이탈리아로 2,885달러(한화 약 329만 원)이며, 프랑스가 2,830.4달러(한화 약 323만 원), 독일이 2,430.6달러(한화 약 277만 원)순임
 - 주요 3개국 중 이탈리아의 1인당 식품 소비액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16.2%), 뒤이어 프랑스(16.0%), 독일(12.6%) 순임

< 1인당 식품 소비액(2016~2020) >

(단위 :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586.1	6,853.5	7,342.4	7,080.8	8,146.0	100.0	15.0
신선식품	4,293.2	4,469.4	4,790.0	4,619.7	5,192.3	63.7	12.4
가공식품	2,292.9	2,384.1	2,552.4	2,461.1	2,953.6	36.3	20.0
프랑스	2,326.9	2,394.9	2,533.0	2,440.5	2,830.4	100.0	16.0
신선식품	1,432.9	1,474.5	1,559.3	1,502.2	1,699.7	60.1	13.2
가공식품	894.0	920.4	973.7	938.3	1,130.7	39.9	20.5
독일	1,936.1	2,019.9	2,224.1	2,157.9	2,430.6	100.0	12.6
신선식품	1,287.8	1,344.2	1,480.7	1,437.3	1,596.2	65.7	11.1
가공식품	648.2	675.7	743.4	720.7	834.4	34.3	15.8
이탈리아	2,323.1	2,438.7	2,585.4	2,482.4	2,885.0	100.0	16.2
신선식품	1,572.5	1,650.8	1,750.0	1,680.3	1,896.5	65.7	12.9
가공식품	750.6	788.0	835.4	802.1	988.5	34.3	23.2

출처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eurostat,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by consumption purpose, 2022.02.28

3) 2022년 2월 조사 기준 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 수치임

- 주요 3개국 모두 신선식품의 소비 비중이 높으며, 주요 신선식품 품목은 육류임
 - (이탈리아) 신선식품 1인당 소비액이 가장 큰 국가는 이탈리아로 1,896.5달러(한화 약 216만 원)이며, 품목별로는 육류(24.1%), 채소류(15.3%), 낙농품(13.5%) 순으로 소비 비중이 큼
 - (프랑스) 신선식품의 프랑스 1인당 소비액은 1,699.7달러(한화 약 194만 원)이며, 소비 품목의 비중은 육류(27.1%), 낙농품(13.8%), 채소류(10.0%) 순임
 - (독일) 신선식품의 독일 1인당 소비액은 1,596.2달러(한화 약 182만 원)이며, 소비 품목의 비중은 육류(23%), 낙농품(16.9%), 채소류(12.9%) 순임

- 주요 3개국의 가공식품 소비 비중은 36.3%이며, 주로 스낵류,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를 소비함
 - (프랑스) 가공식품의 1인당 소비액이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로 1130.7달러(한화 약 129만 원)이며, 품목별로는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6.7%), 스낵류(13.3%), 편의식품(5.1%) 순임
 - (독일) 가공식품의 독일 1인당 소비액은 834.4달러(한화 약 95만 원)이며, 소비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5.8%), 스낵류(9.8%), 편의식품(4.7%)순으로 집계됨
 - (이탈리아) 가공식품의 이탈리아 1인당 소비액은 988.5달러(한화 약 113만 원)이며, 소비품목은 스낵류(15.7%),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3.5%), 편의식품(3.7%) 순임

< 주요 3개국의 품목별 1인당 식품 소비액(2020) >

(단위 : 달러, %)

국가명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인당 소비액	비중	1인당 소비액	비중	1인당 소비액	비중
전체	2830.4	100.0	2430.6	100.0	2885.0	100.0
신선식품	1,699.7	60.1	1,596.2	65.7	1,896.5	65.7
- 육류	768.3	27.1	559.6	23.0	693.9	24.1
- 낙농품	389.9	13.8	410.9	16.9	388.9	13.5
- 채소류	283.4	10.0	313.6	12.9	441.7	15.3
- 과일 및 견과류	186.8	6.6	237.7	9.8	268.8	9.3
- 유지류	71.2	2.5	74.4	3.1	103.2	3.6
가공식품	1,130.7	39.9	834.4	34.3	988.5	34.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71.8	16.7	383.7	15.8	388.4	13.5
- 스낵류	377.3	13.3	237.0	9.8	452.2	15.7
- 편의식품	144.5	5.1	114.2	4.7	105.3	3.7
- 소스 및 향신료	64.1	2.3	65.1	2.7	23.2	0.8
- 스프레드 및 당류	59.8	2.1	27.2	1.1	10.3	0.4
- 영유아용 식품	13.1	0.5	7.2	0.3	9.1	0.3

출처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 한국의 對EU 농식품 수출 현황

- 2020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의 EU 회원국 수출액은 3억 8,145만 달러(한화 약 4,353억 원)로 전년 대비 0.9% 감소함
 - 그 중 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89.2%에 달해 총 3억 4,007만 3,000달러(한화 약 3,881억 원) 수출함
 - (*) 농산물 수출액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5.0%, 최근 3년간 연평균 6.2% 감소
 - 임산물 수출액은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1,188만 6,000달러(한화 약 136억 원)로 전년 대비 7.2%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3.8% 감소함
 -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8.7% 증가한 2,949만 1,000달러(한화 약 337억 원)로 전체의 7.7% 차지, 최근 3년간 연평균 40.0%의 증가 동향을 보임

< 한국의 對EU 농수산물 수출 현황 2018년~2020년 >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A)		2020년(B)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8-'2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농림축산식품	226,428	414,140	219,136	385,076	192,837	381,450	100.0	△0.9	△4.0
농산물	218,151	386,252	208,194	358,133	157,770	340,073	89.2	△5.0	△6.2
축산물	678	15,053	4,026	14,133	27,426	29,491	7.7	108.7	40.0
임산물	7,599	12,835	6,916	12,810	7,641	11,886	3.1	△7.2	△3.8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KATI)

- 2020년 한국산 농산품의 EU 수출액 중 신선식품은 12.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4%의 증가율을 보임
 - 신선식품의 EU 수출액은 총 4,674만 5,000달러(한화 약 533억 원)이며,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 품목별로는 버섯류가 전체 수출액의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김치(3.1%), 과일류(2.4%)를 주로 수출
 - (*) 신선식품 품목 중 김치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38.5%)을 보였으며, 뒤이어 곡류(15.1%), 인삼류(6.4%)이 수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2020년 한국 가공식품의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87.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3% 감소함
 - 2020년 가공식품의 EU 수출 규모는 3억 3,470만 5,000달러(한화 약 3,819억 원)이며, 최근 3년간 감소 동향을 보임
 - (*) 가공식품 품목 중 면류의 수출 비중이 20.2%로 가장 높으며, 뒤이어 음료(9.8%), 과자류(3.5%) 순임
 - (*) 면류가 전년 대비 33.2%의 성장률로 수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뒤이어 소스류가 19.8%로 가공식품 품목 중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한국의 對EU 농림축산식품 수출 품목별 현황 2018년~2020년 >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A)		2020년(B)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8~'2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농림축산식품	226,429	414,140	219,137	385,076	192,837	381,450	100.0	△0.9	△4.0
신선식품	11,023	40,925	12,428	46,108	12,462	46,745	12.3	1.4	6.9
- 버섯류	3,399	12,925	3,783	13,602	3,257	12,521	3.3	△7.9	△1.6
- 김치	1,873	7,351	2,189	8,503	2,791	11,778	3.1	38.5	9.6
- 과실류	4,640	7,650	5,321	9,888	5,186	9,191	2.4	△7.0	26.6
- 채소류	621	4,925	611	5,513	706	5,386	1.4	△2.3	4.6
- 인삼류	44	2,701	35	2,789	45	2,968	0.8	6.4	4.8
- 화훼류	49	577	53	739	38	561	0.1	△24.1	△1.4
- 곡류	185	490	213	548	261	631	0.2	15.1	13.5
- 가금육류	0	0	2	9	0	1	0.0	△88.9	N/A
- 돼지고기	0	0	0	0	0	0	0.0	0.0	N/A
- 산림부산물	213	4,305	220	4,518	178	3,708	1.0	△17.9	△7.2
가공식품	215,405	373,215	206,709	338,968	180,375	334,705	87.7	△1.3	△5.3
- 면류	17,603	50,091	20,602	57,736	25,962	76,912	20.2	33.2	23.9
- 음료	52,830	37,077	52,835	37,421	51,765	37,563	9.8	0.4	0.7
- 과자류	3,710	11,622	4,609	13,536	4,057	13,255	3.5	△2.1	6.8
- 소스류	3,945	9,001	4,420	9,943	4,678	11,907	3.1	19.8	15.0
- 주류	2,447	3,392	2,269	3,911	2,150	3,540	0.9	△9.5	2.2
- 연초류	160	2,495	136	2,198	258	939	0.2	△57.3	△38.7
- 유제품	0	0	0	0	1	22	0.0	0.0	N/A
- 목재류	7,387	8,530	6,696	8,292	7,463	8,178	2.1	△1.4	△2.1
- 기타	127,322	251,008	115,141	205,931	84,040	182,388	47.8	△11.4	△14.8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KATI)

(3) 통관 및 검역 제도

□ 통관제도

- 도착 전 세관에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을 제출
 - 화물 상세정보 제출(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위험품목 코드 등),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등 기재
 - (*) 장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은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 장거리 벌크화물은 EU국가 최초항 도착 4시간 전에 통보해야하며, 철도/운하운송 화물은 EU국가 세관 도착 2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수출입업자는 공인경제운영인(AEO) 중 1개를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함
 - (*) 2005년 무역공급망의 안전성 및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EU 세관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함
 - (*) AEO신청 절차는 공인신청 → 결격사유 조회 → 공인심사 → 공인통보 순서이며, Form-117을 이용하여 이메일 및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함
 -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제운영인이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품목 분류정보(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제도를 등록해야 함
 - EU 공동체 내에 있는 세관에 물품을 신고할 때, 물품은 일반적으로 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분류하는데 해당 수출입물품이 속한 품목분류의 소호를 신고해야 함
- 상품의 수입, 수출에 관련된 모든 주체는 EORI(통관고유부호) 번호가 필요함
 -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인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음
 - EU 위원회 사이트(ec.europa.eu)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EORI 번호가 유효한지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함
- 수입물품의 대리인은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를 완료
 -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수입물품의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서를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 전송방식으로 제출
 - (*) EU 수입신고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를 동봉해야 함

-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및 검역을 실시
 - 육안검사를 실시할 경우 수출입업체 및 대리인 참석 하에 물품선별검사를 실시하며, 별도의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역내 운송허가 통지함
- 보세구역 반출 전 관세를 납부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前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음
 -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이 되어야하며 6,000유로(한화 약 793만 7,340원) 이하의 수출 시에는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 (*) 6,000유로 이상의 수출 시에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 관세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반출이 가능
 - 선하증권 원본 및 관세영수증 발행 후 반출 가능하며, 유럽국가 간 관세 철폐로 유럽 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할 필요 없음

<통관 시 제출서류>

-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 화물상세정보(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상업송장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L)
-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검역제도

- 농식품 검역 시 EU의 동식물검역지침을 준수해야 함
- 식물의 위생 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잔류농약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짐
 -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의 수출 시 EU의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사전 검역을 거쳐야 함
 - 식물(화훼류 포함) 수출 시 경우에 따라 위생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허가됨
 - 병충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물에 한해 식물위생검역증 발급이 면제됨

- 감귤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⁴⁾에 따라 우려병해충을 관리 및 소독 처리한 후 수출되어야 함
 - 유럽연합에서 감귤류 생과실에 대해 지정한 검역병해충에는 ▲*Xanthomonas campestris*(All strains pathogenic to Citrus) ▲*Cercospora angolensis* ▲*Guignardia citricarpa*(All strains pathogenic to Citrus) 등이 있음
 -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되어야 하며 재배지검역을 통과해야 함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IV A.I. points 16.1, 16.2, option(c), 16.3, option(a), 16.4, option(c) and 16.5, option(a) of EC Plant Health Directive 2000/29/EC” (동 과실은 EC Plant Health Directive 2000/29/EC ANNEX IV, PART A Section I : 16.1, 16.2(c), 16.3(a), 16.4(c) 및 16.5(a)에 부합함)

- 토마토 또한 다음 내용이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어야 함

- 1) EU-Regulation 2020/1191/EC, Article 9.1 :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관련
 - 관련된 토마토 종자의 모주는 ToBRFV를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수행한 공적 검역에 기반해서 동 병원균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 관련된 토마토 종자 또는 그 모주는 ToBRFV에 대한 공식적인 시료 채취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검사에 따라 동 병원균에 무감염되었음
 - 등록된 생산지역명
- 2) EU-Regulation 2019/2072/EC, 부록5에 기재된 미생물 관련
 -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병해충 무감염 사항을 부기

- 살아있는 동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i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함
 - 동물 및 축산물의 경우 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제출 필요
 - 동물성 가공식품은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식품 목록의 변경으로 인해서 검사 면제 대상이었던 식품들도 조건을 만족 필요
 - 변경된 목록에는 육류를 함유한 제품, 충전된 젤라틴 캡슐,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기타 식품 보충제/첨가제, 알코올성 음료,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키토산 및 유사성분을 함유한 소매용 식품보충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들의 수의학적 검사 필요
 - (*) 복합식품은 식물재료와 결합된 동물성 가공농산품을 함유한 인체 섭취용 식품으로 가공육, 가공 유제품(냉동), 저장기간이 안정적인 경우 50% 이상의 유제품, 50% 이상의 가공 수산물 및 난제품을 함유할 경우 위생증명서가 요구됨
 - EU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허가국 외 제3국으로 부터 육류 및 유제품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제품 수입 허가국 리스트에 제외되어 있음

4)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가능 품목

□ 협상타결 품목

○ 농산물

- 분재류 : 소나무속, 편백나무속, 향나무속

* 수출허용기간 만료('20.12.)되어 기한연장에 대한 요청 진행 중

□ 협상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밤,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가지, 파, 양파, 상추, 토마토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 화훼류 :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튤립

(2) 수출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감자, 여주, 감귤 묘목

○ EU가 지정한 고위험식물류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EU 내 수입이 금지됨

- 제3국산 종자, 분재, in vitro 형태를 제외한 다음의 재식용 식물(34속 1종)

Acacia Mill.	Nerium L.	Crataegus L.	Albizia Durazz.
Alnus Mill.	Prunus L.	Ficus carica L.	Bauhinia L.
Berberis L.	Salix L.	Jasminum L.	Caesalpinia L.
Cassia L.	Tilia L.	Lonicera L.	Cornus L.
Corylus L.	Acer L.	Persea Mill.	Diospyros L.
Fagus L.	Annona L.	Quercus L.	Fraxinus L.
Hamamelis L.	Betula L.	Sorbus L.	Juglans L.
Ligustrum L.	Castanea Mill.	Ulmus L.	Malus Mill.
Populus L.	Robinia L.	Taxus L.	

○ 축산물

- 열처리 가금육(삼계탕), 가금육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 인터뷰 업체 정보 >

업체명	ACEMARTmall PARIS (프랑스)
업체 유형	식품
담당자명	-

- 현지에서는 한국 식품 중 라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며, 고추장, 된장과 같은 발효 제품의 수요도 확인되고 있음. 농산품 보다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주로 있음
- 자사는 한국산 가공식품 외에도 콩나물, 옥수수, 버섯을 취급하고 있음. 아시아산 농산물의 대부분은 유럽 일부 지역에서 수입되며 한국산의 경우 독일에서 수입됨
- 프랑스로 식품을 수입할 경우, AGRIM(France Agrimer instituion)의 수입 인증이 필요하며, 특히 공급업체로부터 처음 수입이 진행되는 아시아산 제품은 무작위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으므로 수출 업체는 통관 검역에 주의가 필요함. 테스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수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
- 한국 수입 식품은 원산지증명서와 기술분석시험증명서가 요구되므로 준비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GMO가 0.9%를 초과하는 경우 GMO 제품 강조 표시가 필요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함
- 최근 프랑스에서는 디메토에이트의 높은 수치로 인해 일부 농산물 수입이 중단된 사례가 있음. 일부 동유럽 및 일본 방사능 밀집지역의 수입 또한 중단되었음

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 주요 SPS 내용

- EU 식품안전청은 내분비 교란 물질(환경호르몬)을 규제하는 Import Tolerance 제도를 도입하여 잔류 농약 최대 허용치와 함께 수입 식품 검역 기준으로 적용함.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확인된 물질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식물보호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EU 회원국은 식품 접촉 소재에 대한 EU 공통 규정 (Regulation (EC) No. 2023/2006) 및 독자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공통 규제(Regulation (EC) No. 1935/2004)를 적용하며,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는 2개임. 그 외 일부 물질은 허용 한도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됨
- EU 회원국은 식품 유해성분인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감 조치를 시행하며 해당 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과 지표로 표준 농도를 규정함. 표준 농도의 수준은 유럽연합 위원회에 의해 3년마다 검토됨
- 2021년 4월부터 EU로 수입되는 복합식품(식물성 성분과 동물성 성분이 모두 함유된 식품)의 수입규정이 강화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은 동물성 성분에 대한 규제가 면류, 과자류 등 가공식품까지 확대 적용되며 한국산 수출 식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EU 잔류물질 승인목록에 명시된 한국산 동물성 제품의 EU 수출 가능 품목은 수산물뿐이며, 한국산 축산물 또는 50% 이상의 우유, 난(卵)제품이 함유된 한국산 복합식품은 사실 인증서가 요구됨
- 알로에 추출물에 들어있는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성분에 높은 유전적 독성이 확인되고, 알로에 잎 추출물과 단트론에서 발암성이 확인됨에 따라, 2021년 3월 유럽집행위(EC)는 알로에-에모딘, 에모딘, 단트론 및 알로에 제제 성분을 규정 (EC) No 1925/2006의 부속서 III - Part A(금지 물질)에 추가함(부속서 III - Part A)
-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품목의 카드뮴 잔류 한도 기준이 변경됨. 관련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낮아진 수정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food/plant/pesticides/eu-pesticides-db_en
식품 첨가물 허용치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food/safety/food_improvement_agents_en
미생물 규정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food/safety/biosafety/food_hygiene/microbiological_criteria_en
EU에서 승인한 제3국의 제조시설 목록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affairs/trade/non-eu-countries_en

□ 통보문 개정현황(2021년)

○ 우유 달걀, 벌꿀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s) 수입조건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연합이 지정한 복합식품 규정은 동물성 재료의 생산국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에도 철저히 제한을 두고 있음 - EU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동물성 재료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의 승인 여부에 유의해야 함. 또한, 수산가공제품과 우유, 달걀, 꿀 가공제품을 사용한 복합식품의 검역 서류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 EU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에 한국에서 생산된 우유, 달걀, 벌꿀 가공제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EU의 수입 승인 국가라도 EU에서 미승인한 시설에서 생산된 우유, 달걀, 벌꿀 가공제품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EU로 수입이 제한됨으로 이에 주의가 필요함 · 사례(수출가능 조건) - 미국의 EU 승인 시설에서 생산된 우유 가공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국산 과자: EU 수출 가능 (* 미국의 말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제품에 대해 EU에서 수입을 허용 - 미국의 일반제조 시설에서 생산된 우유 가공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국산 과자: EU 수출 불가능 - 한국에서 생산된 우유 가공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국산 과자: EU 수출 불가능 - 수산가공제품이 함유된 복합식품(한국산 수산가공제품 사용 가능): 수출 가능
통보일	(-)
시행예정일	2021.05.21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 TB0144070

○ 알로에 추출성분 첨가 금지조치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집행위(EC)는 2021년 3월 하이드록시안트라센(hydroxyanthracene) 유도체를 포함하는 식품 제제에 유전적 독성과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EC) No 1925/2006의 사용 금지 물질 및 조사 대상 물질로 지정함 - EU는 식품에 사용되는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유럽 식품안전청(EFSA)에 과학적 의견을 요청함. 알로에 베라 및 다양한 알로에 종들의 잎 등을 대상으로 위험 및 안전성 평가를 진행함 - 알로에 추출물에 있는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성분은 높은 유전적 독성이 확인되었으며, 알로에 잎 추출물과 단트론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됨 · 알로에-에모딘, 에모딘, 단트론 및 알로에 제제 성분을 규정 (EC) No 1925/2006의 부속서 III - Part A(금지 물질)에 추가함(부속서 III - Part A) · 한국산 알로에엑즙과 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유럽 및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주로 알로에 음료가 수출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에서 EU로 수출된 알로에엑즙 제품은 약 6kg이며, 폴란드와 헝가리로 수출됨 - 따라서 EU로 알로에엑즙 및 알로에 조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EC) No 1925/2006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금지 물질로 선정된 성분의 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통보일	(-)
시행예정일	2021.03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44069

○ 특정 식품 내 카드뮴의 최대 잔류 한도 개정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식품청은 특정 식품 내 카드뮴의 최대 잔류 한도를 수정한 (EU) No. 2021/1323을 발표하고 식품 내 특정 위해물질의 최대 잔류 한도를 설정한 규정 (EC) No. 1881/2006에 반영 예정 - EU 식품청은 카드뮴의 주간 섭취 한계량을 체중 1kg당 2.5μg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EU 내 일인 평균 카드뮴 노출량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 특히 어린이, 흡연자, 채식주의자와 오염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경우 카드뮴 노출량이 섭취 한계량의 약 2배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 수정안은 (EC) No. 1881/2006의 부록 3.2 카드뮴 항목을 대체하며, 2021년 8월 30일부터 발효 · 한국에서 수출가능한 품목 기준, 식품 내 카드뮴 최대 한도 변경사항(mg/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 0.10 → 0.02 - 호밀 0.10 → 0.05 - 셀러리 0.20 → 0.10 - 보리 0.10 → 0.05 - 가지 0.05 → 0.03 - 소, 양, 돼지 및 가금류의 고기 0.05 → 0.05
통보일	2021.08.10
시행예정일	2021.08.30
개정현황	(-)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reg/2021/1323/oj

(2) TBT

□ 주요 TBT 내용

- 유럽권 국가에 식품 수출 시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식품안전관리제도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해당 인증은 EU 국가 내에서 통용되며, EU 회원국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EU 식품안전기준법에 따라 위생 기준, 라벨링 규정,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도 사용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유기농 생산 및 라벨링 관한 규정 (EU) 2018/848의 개정 조치 사항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유기농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 (EU) 2018/848의 시행 예정일을 2022년 1월 1일로 연기함. 이에 따라 전환 기간 중 소급 인정을 위해 필요한 문서, 유기농 제품 생산 및 회원국이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규정한 특별 시행규정 (EU) 2020/464의 발효일도 연기함
 - 무허가 제품과 물질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의심되는 제품의 예방 조치와 조사, 라벨링, 운영자 그룹의 공식 통제와 최소 추가 통제, 국가 조치 카탈로그 및 유기농 기관과 당국간의 정보 교환에 대해 규칙을 규정함

- 증류주에 하나 이상의 식품을 혼합한 증류주의 라벨링에 관련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을 수정함. 증류주의 정의, 상품제시, 라벨링 및 기타 식품류의 상품제시 및 라벨링에서 증류주 명칭 사용,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을 상정함
- 건강 강조표시에 대한 승인 거부
 -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은 식품에 사용되는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에 관해서 질병 위험 감소 및 아동의 발달과 건강을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에 사용되는 특정 건강 강조표시에 대한 승인을 거부함
- 식품 접촉 용기에 대한 규정
 -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최종 플라스틱 재료 및 물품의 재활용 내용물이 식품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식품의 품질 또는 관능적 특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재료 및 물품의 제조, 적절한 재활용 기술, 재활용 공정, 재활용 설비, 플라스틱 폐기물, 플라스틱 투입물의 수거, 분류 및 오염 제거, 플라스틱 산출물의 사용, 품질 관리, 사업자 등록 및 그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함
 - 이탈리아는 식품 접촉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규정 초안을 채택할 예정임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유럽의회 식품안전 페이지	https://ec.europa.eu/food/safety/labelling_nutrition_en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성분 · 알러지 유발 성분표기 필수 · 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취기한(best before) 또는 최소보존일 (use by) · 보관조건 및/또는 사용조건 · 제조업체명과 주소 또는 · EU 내 수입업체명과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 사용방법 · 알코올 도수 · 영양성분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현지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 가능함	
	글자 크기	글자크기는 최소 1.2mm이어야 할 것 단, 제품 면적이 80cm ² 미만의 경우 글자크기는 최소 0.9mm이상이어야 할 것	
	제품명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되 필요 시 식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명칭(descriptive name)을 사용할 것	
	용량	리터(l), 센티리터(cl), 밀리리터(ml), 킬로그램(kg), 그램(g)을 포함하여 적절한 단위와 함께 표기할 것 음료는 순중량으로 표기할 것	
	원료명	완제품의 5%이상의 원료에 한해 순중량 순으로 기재할 것 2% 넘지 않는 성분은 뒤쪽에 표기할 것 백분율로 표기할 것	
	유통기한	섭취기한: Best before, Best before end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 기재할 것 최소보존일: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 기재할 것	
	원산지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 표기할 것 육류의 경우, 가축의 사육지와 도축장소 표기할 것	
	기타 표시	사용방법, 알코올도수(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등 필요에 따라 표기할 것 (알코올도수의 경우 1.2%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 해당) 사용방법은 제품 사용이 어려울 경우 기재할 것	
	유기농 로고	유럽연합 유기인증 통합로고와 회원국 별로 독자적인 유기인증 로고를 함께 사용 가능함 통합로고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인증기관의 코드번호와 원재료의 원산지를 함께 기재할 것 사전 미포장 또는 제3국 수입 유기식품은 유기인증 로고 사용은 선택적으로 가능함	
	성분표	열량, 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소금 등 매 100그램(g)/100밀리리터(ml) 기준으로 표기할 것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것	
	알러지 유발 성분	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계란, 어류, 두류, 유제품, 견과류, 셀러리류, 겨자, 참깨,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제품, 루핀, 연체동물 (해당 성분 하위품목 중 예외 있음)	

자료 : EU법령포털(EUR-LEX)

○ 김치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Kimchi Yangban 김치	
원료 정보	Chinakohl 75%, Wasser, Frühlingszwiebeln, scharfe Peperoni, Zucker, Salz, Knoblauch, Ingwer, Geschmacksverstärker: Mononatriumglutamat 배추 75%, 물, 파, 고추, 설탕, 소금, 마늘, 생강, 향미료: 글루타민산일나트륨	
보관방법	Nachdem Öffnen kühl aufbewahren 개봉 후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수입업체 정보	Kneynhop & Kluge GmbH & Co. KG Industriestraße 40-42, 28876 Oyten, Germany	크라이엔호프 & 클루게 GmbH & Co. KG 산업거리 40-42, 28876 오이텐, 독일
유통기한	2023.06.03	
원산지	한국	
영양성분	Nährwerte pro: 100g - Brennwert: 126kJ/ 30kcal - Fett: <0.5g - davon gesättigte Fettsäuren: <0.1g - Kohlenhydrate: 5.0g - davon Zucker: 3.0g - Eiweiß: 1.0g - Salz: 1.2g	100g 당 영양성분 - 열량: 126kJ/ 30kcal - 지방: <0.5g - 포화지방: <0.1g - 탄수화물: 5.0g - 당류: 3.0g - 단백질: 1.0g - 소금: 1.2g

○ 가공식품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Tteock Korean Rice Pasta Stick Type 떡 한국산 쌀 파스타 면 타입																																					
유통기한	2022.10.6																																					
순 중량	400g																																					
제품 유형	Reis-Teigware, zu Stäbchen geformt, tiefgefroren 쌀 반죽, 조각형, 냉동식품																																					
재료	Reismehl 72%, Wasser, Salz 쌀 72%, 물, 소금																																					
알레르기 정보	Kann Weizen, Soja und Milch enthalten 밀, 콩 그리고 우유를 포함할 수 있음																																					
보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ühlschrank 1 Tag - Gefrierfach bei -6°C : 1 Woche - Gefrierfach bei -12°C : 1 Monat - Gefrierfach bei -18°C : siehe Mindesthaltbarkeitsdatum - Nachdem Abtauen nicht wieder einfrie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보관 1일 - -6°C의 냉동보관 : 1주일 - -12°C의 냉동보관 : 1달 - -18°C의 냉동보관 : 포장 날짜를 참조하세요 -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세요 																																				
수입업체 정보	Kreyenhop & Kluge GmbH & Co. KG Industriestraße 40-42, 28876 Oyten, Germany	크레이넵 앤 클루지 산업도로 40-42, 28876 오이텐, 독일																																				
영양성분 정보	<table border="1"> <tr><td>Nährwertangabe</td><td>pro 100g</td></tr> <tr><td>Brennwert</td><td>223kcal</td></tr> <tr><td>Fett</td><td>0.7g</td></tr> <tr><td>davon gesättigte Fettsäuren</td><td>0.3g</td></tr> <tr><td>Kohlenhydrate</td><td>50g</td></tr> <tr><td>davon Zucker</td><td><0.5g</td></tr> <tr><td>Ballaststoff</td><td>0.5g</td></tr> <tr><td>Eiweiß</td><td>4.1g</td></tr> <tr><td>Salz</td><td>0.86g</td></tr> </table>	Nährwertangabe	pro 100g	Brennwert	223kcal	Fett	0.7g	davon gesättigte Fettsäuren	0.3g	Kohlenhydrate	50g	davon Zucker	<0.5g	Ballaststoff	0.5g	Eiweiß	4.1g	Salz	0.86g	<table border="1"> <tr><td>영양 정보</td><td>pro 100g</td></tr> <tr><td>열량</td><td>223kcal</td></tr> <tr><td>지방</td><td>0.7g</td></tr> <tr><td>포화 지방</td><td>0.3g</td></tr> <tr><td>탄수화물</td><td>50g</td></tr> <tr><td>그 중 설탕</td><td><0.5g</td></tr> <tr><td>식이섬유</td><td>0.5g</td></tr> <tr><td>단백질</td><td>4.1g</td></tr> <tr><td>소금</td><td>0.86g</td></tr> </table>	영양 정보	pro 100g	열량	223kcal	지방	0.7g	포화 지방	0.3g	탄수화물	50g	그 중 설탕	<0.5g	식이섬유	0.5g	단백질	4.1g	소금	0.86g
Nährwertangabe	pro 100g																																					
Brennwert	223kcal																																					
Fett	0.7g																																					
davon gesättigte Fettsäuren	0.3g																																					
Kohlenhydrate	50g																																					
davon Zucker	<0.5g																																					
Ballaststoff	0.5g																																					
Eiweiß	4.1g																																					
Salz	0.86g																																					
영양 정보	pro 100g																																					
열량	223kcal																																					
지방	0.7g																																					
포화 지방	0.3g																																					
탄수화물	50g																																					
그 중 설탕	<0.5g																																					
식이섬유	0.5g																																					
단백질	4.1g																																					
소금	0.86g																																					
원산지	Hergestellte in Korea	한국산																																				

□ 인증

[필수 인증]

○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EU의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 위생 기준, 라벨링 규정, 오염물질 허용 기준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제도로, 가공, 부분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인간이 섭취하도록 의도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물질과 제품에 적용됨.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이 가능하며, 수출 시 준수해야하는 필수 인증사항임

• 인증명	·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발행 및 검사기관	· 유럽 식품안전청(ESFA)	
• 강제유무	· 필수	
• 제출 서류	· 인증 신청서	
• 비용	· 없음	
• 소요기간	· 없음	
• 절차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나 불시검사를 통해 EU 식품관련 규칙 위반시 수입거부 및 반송, 폐기될 수 있음	

○ 유럽 노블푸드(신식품) 등록


- 노블푸드는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에서 인간이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하지 않은 식품, 새롭게 개발된 혁신적인 식품, 새로운 기술과 생산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그리고 전통적으로 EU 이외의 지역에서 먹거나 먹어온 식품 또는 성분을 의미하며, 시장 출시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 인증명	· 유럽 노블푸드 등록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발행 및 검사기관	· 유럽 식품안전청(ESFA)	
• 강제유무	· 필수	
• 제출 서류	· 협의요청서, 커버 레터, 기술 문서, 증빙 서류 등	
• 비용	· 없음	
• 소요기간	· 약 10개월	
• 절차	· EU 내 소비 이력 확인 → 노블푸드 규정 적용 여부 확인 → Union List 확인 → Regulation(EU) 2018/456절차에 따라 등록	

[선택 인증]




○ 유럽채식협회(V-Label)

- 유럽채식협회 인증은 EU의 대표적인 채식 인증 제도로 유럽 회원국에서 통용됨. 유전자조작(GMO) 제품 및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인증을 받을 수 없음. 인증은 1년 간 유효하며 인증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됨

• 인증명	• 유럽채식협회 (V-Label)	
• 발행 및 검사기관	• 유럽채식협회 (EVU)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 기업정보 및 연간매출액, 인증 신청한 제품 수, 신청한 제품에 대한 전년도 판매 매출액, 신제품일 경우 향후 1년간 예상 매출액	
• 비용	• 250유로(1회), 제품당 라이선스 비용 300유로(연간)	
• 소요기간	• 약 20일	
• 절차	• 인증신청 → 제안서 제공 → 제안서 승낙 → 현장심사 → 결과통보	

○ 지리적표시(GI)

- EU의 지리적표시 인증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고유한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 제도로, 원산지 표시 보호(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전통 특산물 보증(TSG)으로 나뉨. 유럽연합 회원국과 동등성을 인정받은 역외국에서 통용이 가능하며 한-EU FTA 협정에 따라 한국 지리적 표시(PGI) 등록 시 EU 내에서 지리적표시(GI)인증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음. 각 인증 유형별로 신청가능한 품목, 근거 규정, 자격 요건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증 취득전 취득 요건을 확인해야 함

• 인증명	• 지리적표시(GI)	원산지 표시 보호 (PDO)	
• 발행 및 검사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리적 표시 보호 (PGI)	
• 강제유무	• 선택	전통 특산물 보증 (TSG)	
• 제출 서류	• 출원서와 상품명세서		
• 비용	• 없음		
• 소요기간	• 3년 이내(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 있음)		
• 절차	• 인증신청(국내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 → 심사(국내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 → 유럽위원회 승부 → 심사 및 관보 공개 → 이의제기 및 상호합의 → 지리적 표시 등록		

○ EU 유기농 인증

- EU 내에서 생산된 모든 유기농 농산물 인증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으로 올바르게 표시된 로고를 사용해야 함. 유럽에서 생산된 미포장 유기농 식품 또는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들은 자발적으로 이 새로운 로고를 부착할 수 있음. 2015년 유럽연합과 한국은 유기농식품에 관한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함

• 인증명	• EU 유기농 인증(Euro-leaf)
• 발행 및 검사기관	• 농관원 지정 인증기관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 인증신청서,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등
• 비용	• 최소 75만원
• 소요기간	• 약 50일
• 절차	•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 Global Gap(우수 농산물 기준: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Global Gap는 AF(농업 및 어업), CB(작물), FV(과일 및 채소) 3가지로 구성되며 농약과 의약품 투입의 최소화 촉진 및 농장보증체계 채택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유효인증기간은 1년이며 따로 인증마크는 없음. 26개 대분류, 233개 세부 항목으로 가장 방대한 인증 기준을 보유함

• 인증명	• Global Gap • (우수 농산물 기준: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발행 및 검사기관	• FoodPLUS
• 강제유무	• 권장
• 제출 서류	• 인증신청서
• 비용	• 인증수수료: 개별농가 250만원, 단체 400~500만원 • 인증비: 80~400만원
• 소요기간	• 없음
• 절차	•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결과통보




○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Food Standard

- BRC 인증은 Global Food Standard, Storage and Distribution, Packaging 등 여러 가지 인증 체계를 운영 중임. BRC Food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제조업체의 안정성, 품질,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됨. 이 인증은 유통망 내 가공 및 유통되는 모든 업체들의 제품을 이해하고, 식품 안전 위험을 식별하여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인증명	•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Food Standard	
• 발행 및 검사기관	• BRC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 인증신청서	
• 비용	• 900~1,000만원	
• 소요기간	• 없음	
• 절차	• 인증의뢰 → 현장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 → 인증 발급 → 사후심사	

○ FSSC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22000, 식품안전체계인증)

- FSSC22000 인증은 ISO22000를 기반으로 한 인증으로 더 빠르게 보급되었음. 위해요소분석 중점관리기준(HACCP)도 포함돼 있어,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국내 심사원 심사로 인한 비용 절감, 갱신 주기에 따른 차후 비용 절감 등 다른 인증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많아 식품업계의 선호도가 높음

• 인증명	• FSSC22000	
• 발행 및 검사기관	• GFSI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 인증 신청서	
• 비용	• 갱신: 500~600만원, 사후: 250만원	
• 소요기간	• 6~9개월	
• 절차	• 인증신청 → 1차심사 → 2차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 인증발급	

○ Halal Certification Europe(HCE)

- HCE는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에 사용되는 인증이며 할랄 제품들을 관리할 수 있음. 인증이 발급되면 제품에 할랄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이 허락했다는 종교적 의미와 제품의 유통과 보관과정 중에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안심 마크 기능을 가지고 있어 비 무슬림 사이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유럽에 5천만 명의 할랄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장성을 높일 수 있음. 유효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엔 재발행할 수 있음

• 인증명	• Halal Certification Europe(HCE)
• 발행 및 검사기관	• GAC(GCC Accreditation Center)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 인증 신청서, 기타 관련 자료
• 비용	• 별도 비용 없음
• 소요기간	• 없음
• 절차	• 인증신청 → 원재료 및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인증발급



○ The Crossed Grain Trademark(CGT)

- AOECs의 글루텐 프리 기준으로 설정된 인증으로 HACCP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의 만성소화장애증(Celiac Disease)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기준임. 이 글루텐 프리 인증은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 등록 및 보호받고 있음. 식품뿐 아니라 포장, 원재료 등에도 인증이 사용되며 AOECs 감시하에 12,000여개의 제품이 관리되고 있음

• 인증명	• The Crossed Grain Trademark (CGT)
• 발행 및 검사기관	• AOECs(Association of European Coeliac Societies)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 인증 신청서
• 비용	• 신청자에 따라 상이함
• 소요기간	• 시험자에 따라 상이함
• 절차	• 인증신청 → 현장심사 → 인증발급 → 연간검사




○ EURO LEAF 인증

-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기농 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함.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유기농인증을 부여함. 생산 및 가공 시 첨가물 및 화학물질 사용 제한, 방사선조사 및 유전자변형성분 사용 금지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인증명	• EURO LEAF 인증	
• 발행 및 검사기관	• 유럽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 회사 행정 정보, 유기농 규정 준수와 관련된 기록 문서, 유기농 생산 및 관리 계획 등	
• 비용	•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 소요기간	•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 절차	•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최종검토 → 인증서 발급	

○ Vegan Society 인증

-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품에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기준으로 부여함. 소비자들이 세부 원재료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쉽게 비건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원료 선택부터 제품의 제조 및/또는 전체 생산단계에 걸쳐 그 어떠한 동물성 원료 및 생산품, 부산품, 부산물 혹은 파생물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함

• 인증명	• Vegan Society 인증	
• 발행 및 검사기관	• 영국 비건 협회(The Vegan Society)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 회사 기본정보, 제품유형, 제품수, 회사규모 등이 작성된 사전 질문지 • 비건 증명서류, 동물 실험 및 교차 오염 확인서	
• 비용	• 신청자에 따라 상이함	
• 소요기간	• 평균 6개월	
• 절차	• 상담/문의 → 견적제공 → 인증신청 → 비용입금 → 서류확인 → 라이선스 계약서 서명 → 인증서 발급	

○ EVE VEGAN 인증

- 윤리적 및 환경적 문제를 우려하는 소비자의 증가에 따라 VEGAN 제품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해짐. EVE VEGAN은 VEGAN FRANCE 협회가 2016년 설립한 EXPERTISE VEGANE EUROPE S.A.S.의 서비스 인증브랜드임

• 인증명	• EVE VEGAN 인증	
• 발행 및 검사기관	• EXPERTISE VEGANE EUROPE S.A.S	
• 강제유무	• 선택	
•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시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로고, 인증 계약서, 회사 소개서 파일 • 형태 또는 레시피(기술 시트), 완제품 라벨링, 완제품 사진, 포자 시트, 브랜드 로고, 완제품에 살아있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서, 기타 제품 인증서 • 원료 세부사항, 원료는 살아있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서 • 하청 업체 신고서 	*EVE와 계약(인증)을 맺은 회사만 로고 사용 가능
• 비용	• 신청자에 따라 상이함	
• 소요기간	• 평균 6개월	
• 절차	• 상담/문의 → 견적제공 → 인증신청 → 비용입금 → 서류확인 → 라이선스 계약서 서명 → 인증서 발급	

(3) 통관거부사례 현황

□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비교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EU의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는 총 17건으로 집계됨. 2021년 통관거부 사례는 모두 성분 부적합에 따른 것이며, 2019년과 2020년에도 성분 부적합 문제로 인한 사례수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2019~21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

사유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라벨링/포장	1	2	0	3
성분 부적합	2	2	8	12
위생	0	1	0	1
서류미비	0	0	0	0
잔류농약 검출	0	0	0	0
기타	0	1	0	1
합계	3	6	8	17

□ 2021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1년 EU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는 총 8건으로, 모두 성분 부적합 문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21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분 부적합	0	1	0	0	0	1	0	2	3	1	0	0	8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0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1	0	0	0	1	0	2	3	1	0	0	8

○ 통관거부 세부 사유

사유	세부내용	건수
성분 부적합	미허가 물질 들기름 검출	1
	미허가 물질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1
	미허가 신식품성분 헛개나무 검출	1
	미허가 첨가제 E-355 및 E-477 검출	1
	2-클로로에탄올 검출	1
	패스트 그린 FCF(녹색 3호) 검출	1
	수은검출	2
합계		8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농산물	면류	3	37.5	성분 부적합
	음료류	1	12.5	성분 부적합
	식물성 액즙	1	12.5	성분 부적합
소 계		5	62.5	
수산물	어류	2	25.0	성분 부적합
	해조류	1	12.5	성분 부적합
소 계		3	37.5	
총 합 계		8	100.0	

4 수출 애로사항

No.	제목	EU 국가별로 상이한 프로바이오틱스 라벨링 규정	해당국가	EU
			관련품목	프로바이오틱스
1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에서 영양 보충제로 판매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모든 건강 강조표시는 유럽 식품안전청(EFSA)에서 평가하지만, 국가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라벨링 및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은 상이함 · 식품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규정 “(EC) 1924/2006” 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특정 건강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EU 국가에서 판매될 수 없으며, 이는 승인되지 않은 건강강조표시로 간주됨 · 지침 “(EC) Guidance of 2007” 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함유(contains probiotics)’ 라는 표현이 건강강조표시의 한 예시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표시는 현재까지 EFSA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라벨에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부 유럽 국가는 제품 라벨에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출하는데, EU 회원국으로 수출 시 회원국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라벨링 규정이 상이하여 통일된 라벨을 사용할 수 없음 		
기타		<p>※스페인, 식품 라벨에 ‘프로바이오틱’ 사용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0월, 스페인 식품안전 영양청(Spanish Agency for Food Safety and Nutrition, AESAN)은 유럽연합에서 균일한 기준이 생성될 때까지 식품 및 식품 보조제 라벨이 프로바이오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함 - 다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모든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유럽연합 규정 (EC) 1924/2006에 따라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이 용어의 사용에는 건강강조 표시가 수반될 수 없다고 언급함 		

No.	제목	EU 복합식품 규정 요건 충족의 어려움	해당국가	EU
			관련품목	복합식품
			유형*	SPS
2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2021년 4월부터 복합식품에 대해 강화된 수입규정을 적용함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 동물 유래 가공식품과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형태의 식품 · 강화된 수입 규정에 따라, 복합식품에 포함되는 동물성 가공제품은 EU 회원국 내 승인된 제조시설 또는 EU 잔류물질 승인목록(2011/163/EU)에 명시된, 동물성 가공제품 별 EU 수입이 승인된 제3국의 제조시설에서만 생산된 것만 사용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EU로 수출가능한 복합식품은 수산가공식품으로 한정됨 · 그러나 2021년 5월, (EU)2021/800을 공고하여 우유, 달걀, 벌꿀이 포함된 한국산 복합식품의 수입을 허용함. 단, 상온보관&유통 제품에 한하며,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 유래 가공식품은 EU회원국 또는 EU가 승인한 국가의 승인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EU의 수입 복합식품에 대한 원료 안전성 검토가 까다로워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 제출 서류의 양식과 신청 절차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No.	제목	EU, 콜라겐을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	해당국가	EU
			관련품목	콜라겐
			유형*	수입통관
3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 양, 염소, 돼지, 유제품, 가공육으로부터 추출한 젤라틴 및 콜라겐, 또는 이를 위한 원재료는 한국에서 EU로 수출 가능함 · EU로 수출하는 콜라겐 제품에 기능성 강조 표시(Functional Health Claim)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승인이 필요함 · 유럽 식품안전청에 제품에 건강강조 표시를 하기 위해 등록을 하면, 과학적 평가를 통해 해당 주장이 적절한지 심사함 · 심사는 주로 식품 성분의 특징 및 기능성 표시의 효과가 충분히 정의되었는지, 적절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이루어짐 · 신청을 위해서는 식품 및 성분정보, 강조하려는 효과의 특성에 대한 정보, 건강강조 표시의 근거가 되는 모든 과학적 데이터 등이 필요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라겐을 함유한 제품이 국내에서는 기타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나, EU에서는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되어 유럽 식품안전청 기능성 식품 승인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음 			
기타	(-)			

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홍삼 가공제품(수출국 : 독일)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통관 사전검토
- 해외인증 절차

□ 제품 사전검토 결과

○ 통관 사전검토

- 홍삼 농축액 스틱, 홍삼 석류 스틱, 고려홍삼 농축액 로얄
: 보내주신 원재료 정보에 기반하여, EU 및 독일 수출에 문제가 있는 성분은 없음
- 봉밀 절편 홍삼
: 한국산 꿀 및 이를 함유한 식품은 현재 EU 수입이 승인되어 있지 않음. 독일을 포함한 EU 수출을 원하면, EU 수입이 가능한 국가의 꿀을 사용해야 함

○ 해외인증

- 인삼(Panax Ginseng)은 현재 EU에서 식용식물로 등재되어 있는 바, 별도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음. 단 독일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은 유통 전 담당 관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함. 이는 각 유통국의 수입자가 처리해야 하는 행정절차임.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수입사 정보, 제품성분표, EU 내 혹은 제3국 유통 여부, 제품 라벨 등으로, 국가별로 필요한 정보가 상이하므로, 수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함

(2) 건강보조식품(수출국 : 프랑스)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생산시설 등록
- 당사 제품의 복합식품 포함 여부
- ESFA 등록 절차, 소요기간, 비용

□ 콜라겐(Collagen) NAG (N-Acetylglucosamine) 제품 검토 결과

○ 제품 특징

- 1차적으로 가공된 Fish Gelatin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당사 생산 공장에서 2차적으로 가공을 하여 콜라겐 소재 생산

(*) 중국은 콜라겐 제품에 대해 EU 수입이 승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국산 콜라겐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EU 반입이 불가능함

○ EU 수출을 위한 생산시설 등록 필요 여부

- EU로 수입되는 식품에 함유된 모든 동물유래 재료는 EU 회원국이나 EU 승인을 받은 제3국 생산/가공시설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함
- 1차 원료 생산시설이 EU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한 한국산 제품도 원칙적으로 EU 수입이 불가능함
- 1차 원료를 재차 가공하여 콜라겐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면, 1차 원료 생산시설과 더불어 귀사의 생산시설 역시 EU 승인시설 대상임. 동물유래 재료를 생산/가공하는 모든 시설이 EU 승인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당 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EU 수출이 가능함

○ 복합식품 분류 여부

- EU 승인시설 등록은 제품 분류에 관계없이 생산/가공하는 재료에 따라 결정됨. 콜라겐 제품의 생산/가공시설은 EU 승인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함. 건강보조식품 생산시설은 EU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생산시설에서 동물유래 재료(콜라겐)을 생산한다면, 이 경우에는 EU 승인대상에 해당함. 참고로, 복합식품 생산시설 역시 EU 승인대상이 아님

□ 콜라겐(Collagen) NAG (N-Acetylglucosamine) 제품 검토 결과

○ 제품 특징

- 1차적으로 가공된 키틴(Chitin)을 태국에서 수입하여, 당사 생산 공장에서 2차적으로 가공을 하여 NAG 제품(원료 및 완제품) 생산

○ EU 수출을 위한 생산시설 등록 필요 여부

- 키틴을 원료로 하는 NAG 생산시설은 EU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됨. 키토산 및 글루코사민 등과 같이 고도로 정제된 제품군 생산시설은 타 동물유래 재료에 적용되는 EU 승인시설 조건 예외대상임. 귀사의 제품을 사용한 식품을 EU로 수출하고 있는 일본업체는, 최종제품의 성격에 따라 EU승인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일본업체가 생산하는 최종제품이 건강보조식품이거나 복합식품일 경우, 해당 일본업체는 EU 승인 대상이 아님

○ 복합식품 분류 여부

- 건강보조식품 생산 시설은 EU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생산시설에서 동물유래 재료(콜라겐)을 생산한다면, 이 경우에는 EU 승인대상에 해당함. 더불어, 원산지에 관계없이, 유제품을 함유한 한국산 식품은 현재 EU로 수입이 불가능함

○ 생산가공시설 등록 정보

- 생산가공시설 등록 안내 관련 서식
 - * 가이드 : <https://www.nfqs.go.kr/2013/contents.asp?m=3&s=6&s2=2>
- 관할 구역별 지원 연락처
 - * 가이드 : <https://www.nfqs.go.kr/2013/contents.asp?m=6&s=3&s2=1>

○ 노벨푸드 “Novel Food” 등록 필요 여부

- NAG는 노벨푸드가 아님. 갑각류의 껍질에서 추출한 키틴 및 기타 부산 물질이 이미 노벨푸드 목록에 “Polyacetyl-glucosamine” 이란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음
 - * 가이드 : https://ec.europa.eu/food/safety/novel_food/catalogue/search/public/index.cfm
- 다만, 일반식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 용도로만 허용되어 있으며, 귀사의 제품군 역시,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노벨푸드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자문의견

- 콜라겐 및 NAG는 동물 유래 재료를 원료로 하는 고도 정제 식품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복합식품 규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각 품목은 별개의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콜라겐과 NAG의 1차 재료로 사용된 동물 유래 원료(생선 및 갑각류 부산물 등)가 EU 회원국 및 EU 승인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EU 승인시설 여부는 원료 공급 업체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임. 콜라겐과 NAG는 이미 EFSA의 승인을 받은 식품입니다. EU 승인시설 등록은 EFSA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로 한국의 주관부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함
- 한국은 콜라겐 EU 수출 승인국가로 현재 1개의 생산시설이 EU에 등록되어 있음. NAG 1차 원료 생산/가공시설도 EU 승인시설이어야 함
- 건강보조식품의 유통국 제품신고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수입자가 수입 시 해당국 담당 관청에 진행함. 수출업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아님. 추가적인 질문은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aT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하기 바람